(2)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

□ 사업개요

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

□ 지원규모: 15개사 내외(예산 소진 시까지)

□ 지원대상

○ 기술분쟁 관련 조정·중재, 민사소송,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

(조정·중재)「중소기업기술보호법」,「상생협력법」,「하도급법」,「발명진흥법」,「산업기술보호법」관련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

(손해배상청구 소송)「상생협력법」,「하도급법」,「부정경쟁방지법」,「특허법·실용신안법」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(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)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

(**행정조사**)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,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

□ 지원내용

-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%(기본)~90%(우대) 지원
- * 민·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% 지원
- * 선도기업(20%), 창업기업(20%), 경찰·검찰 요청 사건(20%) 등 최대 40% 추가 지원

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별도 공고 예정(2월)
-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e-mail : cod@win-win.or.kr)
 - *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 확인(소송대리인(변호사 등) 신청 가능)

□ 지원절차

